

가계곤란 장학금 서류준비 안내

가계곤란 장학금 서류에는 가족관계 관련 서류, 재산세 관련 서류 및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각 장학금별로 신청 안내에 따라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해당 항목별 관련 서류 준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 아 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구분	준비서류	발급기관
해당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자치센터 2) 인터넷발급: 민원24(minwon.go.kr) (공인인증서필요) 3) 교내 ECC 학생서비스센터 앞 발급기(지문인식)
부모가 부양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학생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 학생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 학생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한 부모의 주민번호가 공란이거나 사망으로 표기됨)	

[재산세 관련 서류]

구분	준비서류	발급기관
해당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잘못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1) 주민자치센터 2) 인터넷발급: 민원24(minwon.go.kr) (공인인증서필요)
제출 대상	• 부모가 부양자일 경우 부·모 각각 제출 • 학생 본인이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발급 대상 항목	• 재산세(주택, 토지, 건물에 한함) (주민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제외하여 제출)	
과세년도	• 2020년도 (2020년 1월~7월) 2019년도 제외하여 선택	
대상지역	• 전국 자치단체 혹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	
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 부양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 사실 없음 (전국자치단체)”가 기재된 과세증명서 제출 지역자치단체 서류 제출 불가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구분	준비서류	발급기관
해당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관리공단(nhis.or.kr)(공인인증서 필요) 2) 팩스 발급: 건강보험관리공단 (전화: 1577-1000)
대상 항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월별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음) •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포함된 확인서 제출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부모가 직장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서 상에 가입자(또는 부양자)로 있는 기간 동안의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부모 중 한 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단, 건강보험증 피부양자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급여개시유효일)이 해당 장학금 신청 요건의 일자 이전이며 건강보험증 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증서 번호가 일치해야 함(일치하지 않은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형제·자매 및 조부모 등이 부양자이고 부모와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 피부양자(본인 및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학생 본인이 기혼인 경우	• 가입자(본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및 피부양자(본인 혹은 배우자)의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	
지역보험 가입자인 경우	• 세대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원칙 • 세대원(피부양자) 명의로도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이 경우 건강보험증 번호와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증서 번호가 일치해야 함(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급여개시유효일) 확인 필요)	